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복지정책과]	1
2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4
3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8
4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11
5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14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1.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 11. 28.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3. 11. 2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3. 12.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규정된 ‘보호관찰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시켜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1) 제명을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으로 변경함
- 2) 제1조 목적에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

- 3)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등’으로 변경해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와 갇생보호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정하던 것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와 ‘갇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를 받을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보호관찰 대상자”란”을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으로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을 “제3조각 항에 따른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 중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3. 12.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권해도]

가. 제안이유

-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민간부문의 의견청취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함(안 제2조·제4조·제6조·제14조)
- 2)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신설함
 - 1) 설치·기능을 정함(안 제8조)
 - 2) 구성·임기·해촉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 3) 회의·운영을 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정된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서 일부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신설하여 기능,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종전 제8조)제1항 중 “구성·운영해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을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장 또는 계장 각각”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거창군·거창경찰서 및 거창교육지원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회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 협의회의 간사로 둔다.

- ② 협의회는 안전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치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를 둘 수 있다.
-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3. 12.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가. 제안이유

- 경상남도교육청 쇄신안에 따라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업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함(안 제명, 제1조~제4조)
 - 가)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행복교육지구 ⇒ 미래교육지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경상남도교육청 쇄신안에 맞추어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제5호 중 “행복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3. 12.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세부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구체적이고 변경 가능한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6조·제7조)
가)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 2) 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에서 변경이 가능한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세부 시상 기준은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안 제2조제6호의 “이노비즈기업”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 제3항) 중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를 “제조업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이노비즈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3. 12.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동복]

①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정한 위치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 이를 매입하고, 그중 다수의 토지를 소유한 거창중앙교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외 구역의 일부 군유지와 거창중앙교회 토지를 교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 업 명 :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조성사업
- 위 치 :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7. / 4년
- 사 업 비 : 26,613백만원(국 13,127, 도 1.8, 군 13,484.2)

(용역비 1,128, 부지매입비 16,15, 공사비 23,870)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 32필지 조성, 타운하우스 16세대,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 조성면적 : 43필지, 38,930m²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16필지, 14,898m² / 첨부1 참조

다. 처분(교환)재산 세부내역 : 8필지, 3,660m² / 첨부2 참조

라. 추진경과

- 2023. 2. 13. : 지역활력타운 공모지침 시달
- 2023. 4. 10. : 경상남도 평가위원회(도 신청대상 선정 시군 : 거창, 산청, 사천)
- 2023. 4. 17. : 국토교통부 방문 사업(안) 설명
- 2023. 4. 26. : 공모 신청서 제출
- 2023. 5. 16. : 통합선정위원회 현장점검(평가)
- 2023. 6. 2. : 공모 선정(전국 7개소, 도내 유일
 - 거창, 인제, 괴산, 예산, 청도, 남원, 담양
- 2023. 7. 12. : 자문건축가(임지환 동윤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촉
- 2023. 9. 15. : 지역개발계획(변경) 안 제출

마. 향후계획

- 2023. 11. : 중앙 지방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 2023. 12. : 지역개발계획(변경) 승인
- 2024. 12.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2025. 3. : 공사 착공

- 2027. 12. : 사업 완료

바. 기대효과

- 사업대상지 내 거창중앙교회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 은퇴자들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안정된 정착과 지역 사회 활력 및 발전에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3 참조

첨부1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면적				
계	16			18,086	14,898	338,548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1206	도	629	234	2,878	2024. 12.	지역활력 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국(기재 부)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산9	임	198	198	895			박*준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917-14	과	5,424	5,424	111,734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산11-1	임	1,901	1,901	38,020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산11-3	임	1,388	225	11,677			김*술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10	묘	188	188	7,068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16	전	294	62	1,395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24	전	257	94	3,666			정*성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25	전	392	47	4,413			김*규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40	대	496	481	31,794			하*선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41	전	41	41	2,033			김*규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55	묘	1,087	990	8,583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56	전	1,430	1,430	33,462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57	전	309	51	1,244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23	대	524	4	306			유*분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43	전	3,528	3,528	79,380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지 교환	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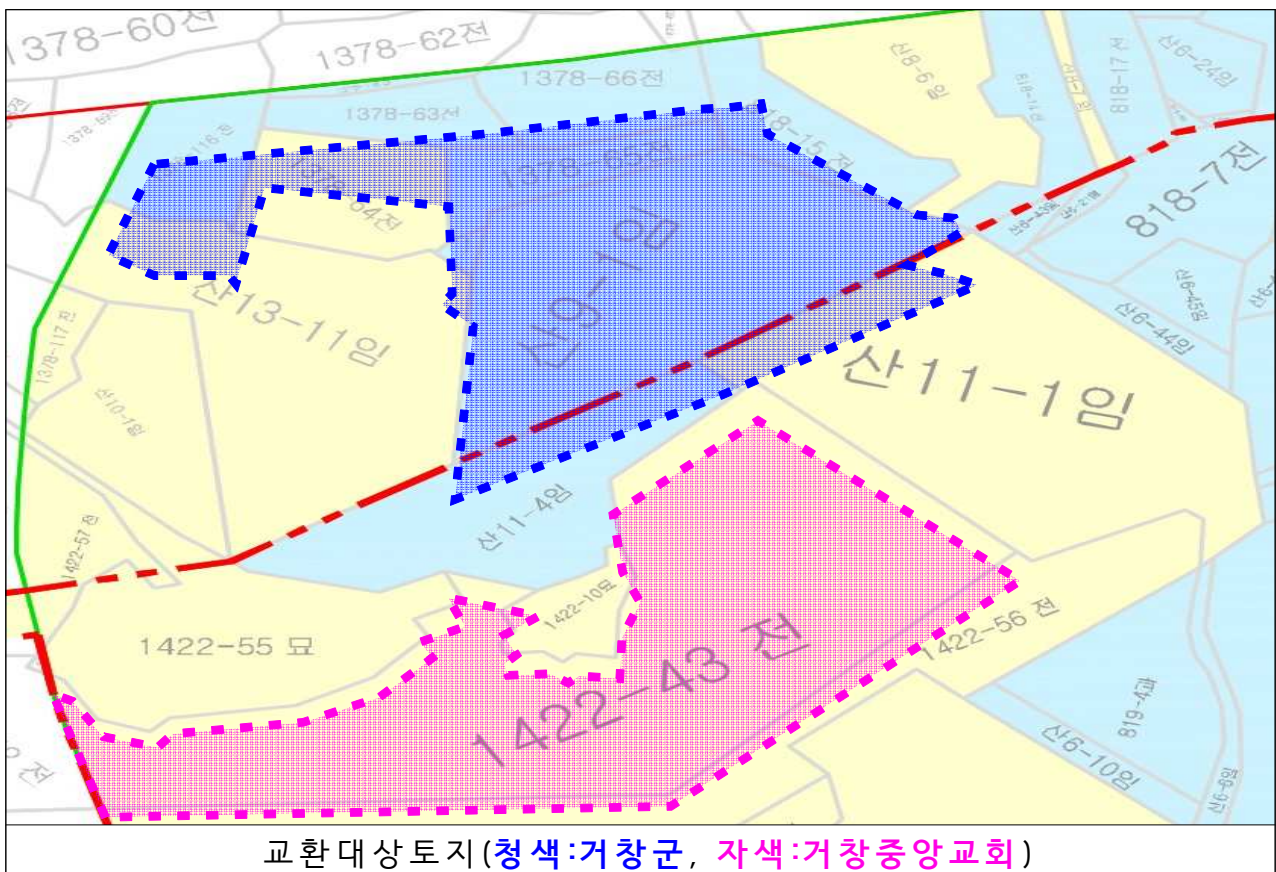
※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처분(교환)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처분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면적				
계	8필지			3,660	3,660	89,147			
처분 (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산 9-1	임	1,785	1,785	35,700	2024. 12.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지 교환	거창군
처분 (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818-15	전	381	381	13,183			
처분 (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63	전	261	261	6,499			
처분 (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65	전	292	292	7,271			
처분 (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66	전	539	539	13,421			
처분 (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68	전	25	25	663			
처분 (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116	전	333	333	11,222			
처분 (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118	전	44	44	1,188			

※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 교환대상 재산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22-43(전 / 3,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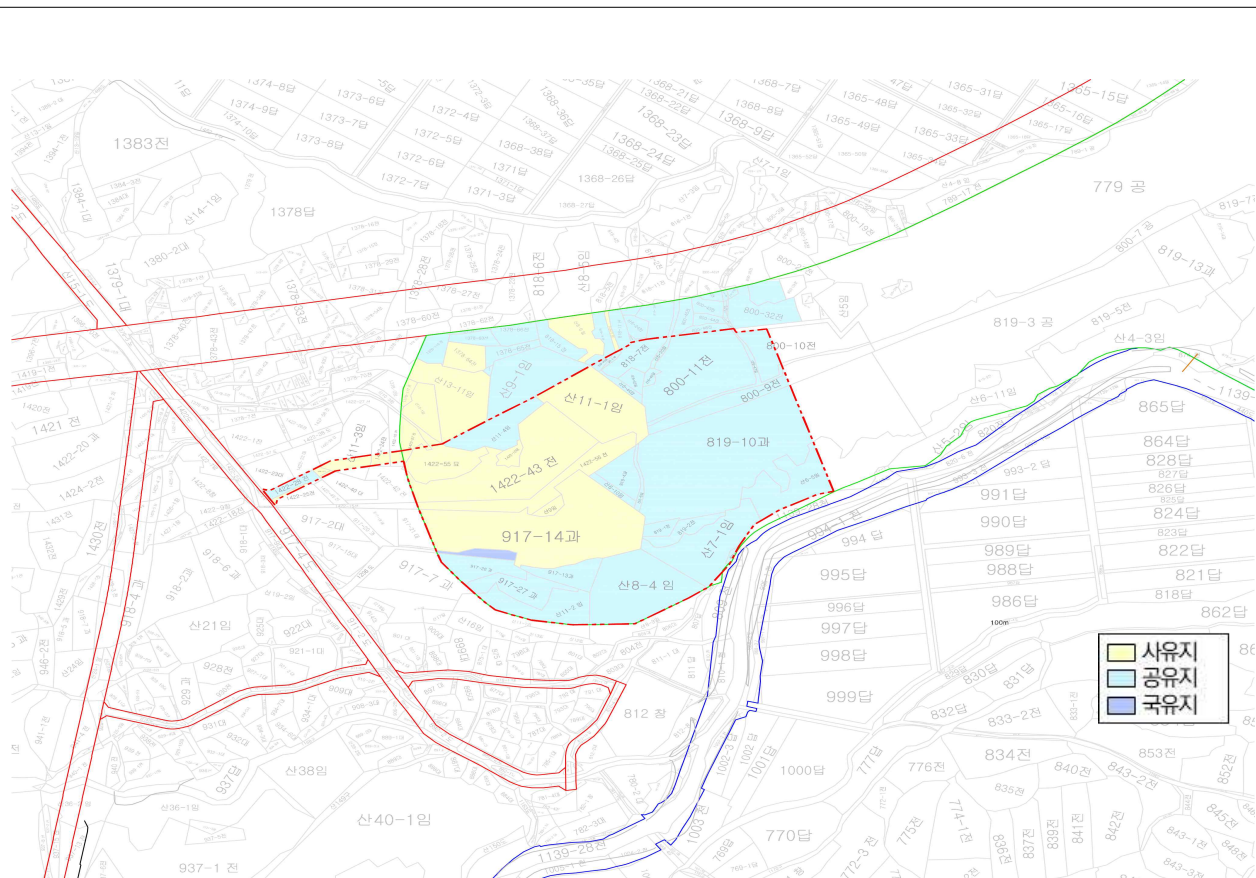


첨부3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9번지 일원



○ 사유지 및 국유지 확보 필요

②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면소재지 내 각종 행사 공간 및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사업추진위원회) 건의사항이 있어 지역민의 삶 질 향상 목적을 위해 사업 대상지 토지 정비하여 다목적마당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목적마당 조성
- 위치 :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3, 1488-4번지
- 사업기간 : 2023. 10. ~ 2024. 10. / 1년간
- 사업내용 : 다목적마당 조성
 - 행사공간, 야외공연장, 운동·레포츠 시설, 주민 쉼터 등
- 사업비 : 1,900백만원
- 조성면적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집행잔액(555백만원) 활용
및 군비 등 추가사업비 확보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면적(㎡)				
계				84,455			
취득	토지	북상면 갈계리 1488-3번지	2,579	49,001	2023 ~ 2024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다목적마당 조성	
		북상면 갈계리 1488-4번지	1,866	35,454			

※ ¹⁾기준가격 적용 : 토 지 → 현.기준 공시지가

지 장 물 → 지장수목 등 미보상 조건 토지 매입

다. 추진경과

- 2018. 5. : 북상면 농촌중심지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1. 4. : 북상면 농촌중심지 시행계획 승인·고시
- 2021. 5. ~ 2023.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라. 향후계획

- 2023. 11. : 경남도 집행잔액 재투자계획 협의 및 승인
- 2023. 12. : 편입물건 보상협의
- 2024. 이후 : 경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다목적마당 조성
공사 추진

마. 기대효과

- 면 행사 추진에 따른 공간 임대비용 절감
- 부족한 생활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민 삶의 질 향상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 참조

첨부1

위치도 및 지적현황



③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복지회관 등 3건 처분)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사업효과 증대 및 주민이용편의 제공 목적을 위해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처분(철거)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분개요

- 사 업 명 :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위 치 :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47-4, 246-5번지
-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사업내용 : 마리면 행정복합타운(문화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 사 업 비 : 4,000백만원 (군 2,640, 도 860, 군 500)

나. 처분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2)기준가격 (천원)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시 설 명	면적 (㎡)				
		소 재 지					
계				178,223			
처분	건축물	복지회관	(2층) 600.25	147,420	2024 ~ 2025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마리면 말흘리 247-4번지					
		창 고	(1층) 144.00	17,568			
		마리면 말흘리 247-4번지					
		지역아동센터	(1층) 81.70	13,235			
		마리면 말흘리 246-5번지					

※ ²⁾기준가격 적용 : 건 축 물 → 가감정 결과

다. 추진경과

- 2018. 5. : 북상면 농촌중심지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18. 2. ~ : 군수님 연두 순방 시,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건의
- 2018. 9. ~ 2022. 4. :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완료)
 - 3필지, A=7,395㎡ (부지매입비 454백만원)
- 2020. 3. ~ 5. : “마리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실시 ⇒ 3)안전등급 B
- 2022. 6. : 2023년 농촌협약 선정
- 2023. 5. : “마리면 복지회관 정밀안전점검”실시 ⇒ 4)안전등급 C
- 2023. 6. ~ 2024. 2.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사업 착수설명회 및 주민위원회 협의 7회, 선진지 견학 1회 추진

※ 3) 안전등급 B : 구조적 결함이 없는 양호한 건축물

4) 안전등급 C : 주요부재 내구성 및 기능 저하에 따른 보수 또는 보강 필요

라. 문제점

- 문화자치센터(농촌협약 사업) + 행정복지센터(군 자체사업)
 - 복합화 계획수립 관련 사업부지 내, 위치한 기존 건물에 대한 처리계획 미확정
 - ⇒ 금회 사업추진 시 반영될 도입시설과 그 규모의 산정 등을 위하여 기존건물에 대한 처리계획(존치여부)에 대한 조속한 확정이 요구됨

마. 기존 건물 처리(존치여부)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안)

시 설 명	존치 여부	담당부서 검토	비고
면사무소	존치	▶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건물 존치 ⇒ 향후 행정(부속)시설 활용 예정	
복지회관	철거	▶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나,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과,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누수 등으로	

시 설 명	존치 여부	담당부서 검토	비고
		건물의 내구성. 기능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 보수가 필요 ※ 개략 보수비 : 40백만원 + 연간 3백만원 정도 ▶ 기존 건물 실별(건강증진실, 경로당, 강당) 면적 협소로 인한 현재 주민 이용불편 초래 ▶ 금회 계획된 문화자치센터와 공간 및 프로그램 중복 ▶ 면사무소 ↔ 계동마을 접속도로부 시거확보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지속 발생 ▶ 현 건물의 잔존가치(가감정결과) 147백만원 ⇒ 기존 건물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 신축 반영	
창 고	철거	▶ 건물 노후 및 경관 저해,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단지 배치계획 지장초래(저촉)로 인한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철거 ▶ 현 건물의 잔존가치(가감정결과) 18백만원 ⇒ 기존 건물 철거 후 행정복지센터(군자체) 반영	
아동센터	철거	▶ 건물 노후 및 경관 저해, 초등생 안전사고 우려 ▶ 면사무소 ↔ 계동마을 접속도로부 시거확보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지속 발생 ▶ 현 건물의 잔존가치(가감정결과) 13백만원 ⇒ 기존 건물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 신축 반영	

바. 향후계획

- 2023. 11. ~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2023. 1. ~ 2024. 2.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경남도 승인 및 고시
- 2024. 3. ~ 10.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 2024. 10.이후 : 공사 착공 및 준공(장기계속공사)

사. 기대효과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복합화 추진에 주민이용성 확보
- 노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쾌적한 환경 조성
- 사고위험 교차로 시거 확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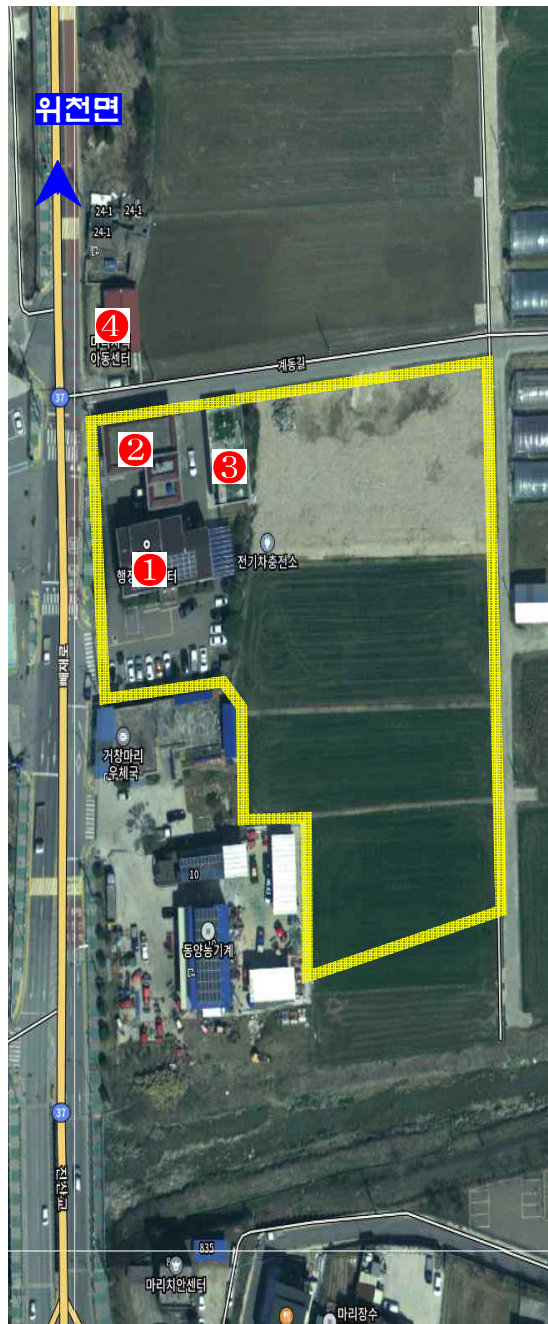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건축물 현황 및 적정시설 규모 검토 : 첨부 참조

첨부1

사업부지 내 건물현황 및 처리계획



❶ 마리면사무소【사용승인 : 1988. 12. 31.】

- 1종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2층)

A=600.25㎡

- 1층 : 면사무소
- 2층 : 면장실, 회의실

⇒ 처리계획 : 건물 존치(행정 부속시설 등 활용)

❷ 마리복지회관【사용승인 : 1988. 12. 31.】

- 1종근린생활시설(지상2층) A=453.15㎡

- 1층 : 노인회관, 체력증진실
- 2층 : 다목적실, 회의실

⇒ 처리계획 :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농촌
협약 사업) 반영

❸ 마리면 창고【사용승인 : 2011. 9. 26.】

- 창고시설(지상1층) A=144.00㎡

⇒ 처리계획 : 철거 후 행정복지센터(군
자체 사업) 반영

❹ 마리지역아동센터【사용승인 : 1988. 1. 21.】

- 1종근린생활시설(지상1층) A=81.7㎡
- 2011년 (면대본부→지역아동센터 전환)
- 학생정원 19명 중 17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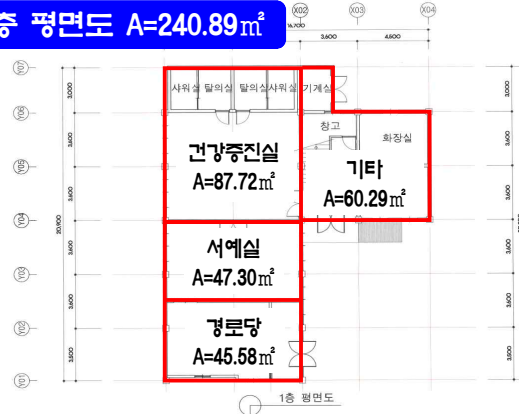
⇒ 처리계획 :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농촌
협약 사업) 반영

첨부2

층별 평면도 및 적정시설 규모(안)

층별 건축평면도 (2층, 연면적 A=453.15㎡)

1층 평면도 A=240.89㎡



2층 평면도 A=212.26㎡



적정시설 규모 검토(안)

▶ 이용현황(주민수요) 및 적정규모 검토(안)

- 기존 마리복지회관 시설협소로 인한 주민참여도 및 이용성 저하

구 분		건강증진실	경로당	강당
현재	이용자	30인	10인	120인
	규모	87.72㎡	46.44㎡	153.94㎡
수요	최대이용	150인	50인	200인
	일평균이용	(추정) 50인	(추정) 30인	-
	최대규모	240.90㎡	112.00㎡	321.30㎡
	적정규모(안)	50인 120.00㎡	25인 80.00㎡	200인 280.00㎡
복상	최대이용	100인	40인	250인
	일평균이용	50인	30인	-
	규모	136.26㎡	96.25㎡	330.00㎡

※ 최대규모 산정 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적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 시설 규모결정 기준

※ 적정규모 산정(안) : 복상면 행정복지센터 기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①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건은

- 교환대상 부지가 본 사업대상지 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고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②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 면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마당 조성이 필요하긴 하나, 소재지 내 갈계숲, 학교 운동장과 최근 준공된 게이트볼장 등을 활용하는 등 타 면지역과의 형평성 등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 추후 행정절차 이행기간 내 공사비 확보를 위한 타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거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③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복지회관 등 3건 처분)

-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해 복지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처분(건물의 멸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거창군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마리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구역 내 복지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처분(건물의 멸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의회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함.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8. 부대의견

-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원안대로 편입부지를 매입하되, 농촌협약 사업 2차 공모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람.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